

김학훈 변호사



규제의 탄력적 집행을 위한 제언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다투어 보도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전반적인 내용은 당분간은 불투명하고 성장을 전망치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내수시장의 침체도 그렇거니와 중국과 신흥국 위기 등 다양한 변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당장의 생존까지 고민하여야 하는 기업은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M&A도 과거 신사업 진출,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보다는 부진한 사업부문의 정리 등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인지 M&A 시장의 큰손은 전략적 투자자에서 PEF 등 재무적 투자자로 이미 옮겨간 것 같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하여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동막골 주민들처럼 신중함(?)이 몸에 배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한 번에 쌍수를 들 수는 없겠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임엔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반응은 글썽요(?)라는 것이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이다.

국내 규제 간과해 곤란 겪어

필자가 지문을 제공하고 있는 건설한 중견기업은 일찍부터 한우물만 개척하여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화라는 구호가 제창되기 이전부터 동남아, 유럽, 미주 등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각종 세제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하여 합작 등 다양한 M&A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현지에서 창출한 재원을 이용하여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규제가 아닌 국내 규제를 간과(투자결정에 대한 본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만)하여 최근 다른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투자(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해외 수입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와 관련, 여러 곤란을 겪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관련 법령은 해외 자회사 등이 현지에서 M&A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M&A의 종결 이전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종 외국환거래 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회사가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송금에 필요하므로 가사 기업의 담당자가 모르더라도 외국환은행의 창구 지도를 통하여 준수되고 있으나, 현지 자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현지에서 M&A를 하는 경우 위 규정을 간과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 해외 자회사 현지 M&A 활동도
국내 외국환은행 통해 신고해야 ”

가 상당수 있다고 한다.

왜 이런 규제가 생긴 것일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상 기업 오너가 해외 자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전횡하는 등 외국환거래 규제를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송금제한 등 기계적 제한 의문

이를 심분 이해하더라도 정상적인 현지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규제 당국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면 형사고발하고 해외 투자 기업의 동맥을 경화시키는 본사의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송금 제한 등의 기계적인 제재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활동마저 제한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검찰의 기업인 수사에게만 필요한 말일까?

위 제도는 오래 전부터 존치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규제 당국 내에서도 적용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사안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부분 의견 수렴이 되었는데 과거와의 형평성(?) 등 다른 요소에 의하여 기존 의견을 존치하고 있다고 한다.

규제 당국에 과거 수개년도의 당해 회사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간청(?) 끝에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규제기관 내부 결재를 위하여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안을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임을 소명을 넘어 입증하여야 하는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장탄식이 쏟아질 만하다. 불행하게도 이 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안이 중대한 위반인지 단순한 착오인지 1차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을까? 사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 규제 자체에 방점...가장 큰 원인 규제목적 준수 위한 고민 더 해야 ”

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 기업의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는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월권행위가 되는 것일까? 필자가 알기로는 규제기관의 담당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들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높은 식견에 탄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중대 위반, 단순 착오여부 따져봐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규제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을 규제 그 자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규제의 목적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규제에 인하여 사회 전체의 능률과 효율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실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규제의 철폐 등 관련 정책을 제시할 책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는 규제완화는 탁상공론, 전시행정, 선심행정 등의 구호에 퇴색되기 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국가 정책 실행의 최첨단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규제기관 담당자들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의 집행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목적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 공정한 규제 집행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김학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